

KOTRA자료 23-040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CFIUS) 가이드북

KOTRA ·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공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Lee
& KO

Global Commerce Institute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발간사

미국은 대한민국 제1의 투자대상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통과와 영향으로 미국 반도체, 친환경, 미래 자원 분야에 대한 우리의 투자 진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이하 CFIUS) 집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 재무부가 CFIUS 집행 및 처벌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정책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KOTRA는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대상과 절차, 2020년 2월 이후의 CFIUS의 심사 사례 분석, 미국 투자 진출 시 유의사항 등 최신의 투자 관련 정보를 수록하여 미국 투자를 계획하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 말부터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분야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인 핵심기술산업은 CFIUS의 주요 심사대상이 되는 만큼 동 가이드북이 CFIUS 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 가이드북이 발간되기까지 자료 집필과 편집에 도움을 주신 KOTRA 투자M&A팀과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미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KOTRA Invest KOREA 대표 김 태 형

목차

08	I.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란?	
	1. 배경 및 관련 규범 체제	10
	2. CFIUS 개관	13
	1) 조직과 구성	13
	2) CFIUS의 역할과 기능	14
16	II. CFIUS의 심사 대상 및 절차	
	1. CFIUS의 심사 대상	18
	1) 지배적 투자	19
	2) 비지배적 투자	20
	3) 부동산 거래	24
	4) CFIUS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25
	2. CFIUS의 심사 절차	26
	1) 심사 절차 개관	26
	2) 심사 고려 요소	28
	3) CFIUS의 심사 이후 조치	30
	4) CFIUS의 이행 및 처벌 조치	32
35	III. 최근 CFIUS 심사 사례 분석 (2020년 2월 이후)	
	1. CFIUS 심사가 승인된 사례	37
	1) 사례	37
	2) 평가	47
	2. CFIUS의 조사가 종료된 사례(승인과 유사)	49
	1) 사례	49
	2) 평가	50
	3. CFIUS의 심사 승인이 거부된 사례	51
	1) 사례	51
	2) 평가	53
	4. CFIUS 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	54
	1) 사례	54
	2) 평가	59
61	IV.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1.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63
	2. CFIUS 심사 관련 투자 진출 체크리스트	64



약어 및 용어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미국 산업안보국
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CMIC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중국 군산복합체
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HSC	Homeland Security Council 미국 국토안보위원회
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 예산관리국
OST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미국 과학기술정책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WF	Sovereign Wealth Funds 국부펀드
TID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Data 미국 기간산업(기술, 인프라, 데이터)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

요약

2018년 FIRRMA 제정 이후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확장된 심사 대상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 또한 보다 더 엄격하게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쪽으로 발전되었다. 기존 CFIUS의 심사대상이 되는 투자 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로만 한정되었으나, FIRRMA의 제정으로 4가지 유형의 거래(②~⑤)가 심사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가 CFIUS의 검토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 ①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을 창설하는 인수 · 합병

(추가) ② ‘비지배적(Non-controlling)’ 투자*

*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는 TID(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Data) 미국 사업에만 한정하고 규제 대상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추가) ③ 군기지 또는 민감한 국가안보시설 인근 부동산거래 포함

(추가) ④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변화: 지배권이 생성되는 경우

(추가) ⑤ CFIUS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CFIUS의 심사절차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a) 외국 정부가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를 직간접적으로 갖는 TID 사업에 대한 투자, b) 핵심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FIRRMA 제정을 통해 도입된 약식신고제도는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국가안보 1차심사(45일), 국가안보 2차 심사(45일)를 거치게 된다. 이후 CFIUS는 국가안보 조사결과에 따라 합병, 매입 및 인수 등에 중단 및 금지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15일간 결정 기간이 부여된다.

CFIUS는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국가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 위협을 일으킬 능력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위협, 미국의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시스템, 조직, 또는 구조상의 취약성에 대해 분석, 해당 거래 결과로 위협과 취약성이 표면화되었을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CFIUS는 해당 투자를 승인하거나, 완화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해당 투자 거래의 금지 및 차단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CFIUS는 심사 이후 조치와는 별개로 CFIUS의 집행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예: 신고의무 위반, 완화계약 미준수, 허위정보 신고 등)를 직접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CFIUS의 심사절차 및 심사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FIUS 신고 여부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CFIUS)란?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CFIUS) 가이드북

배경 및 관련 규범 체제 CFIUS 개관

1 배경 및 관련 규범 체제

최근 중국의 미국 내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미국 주요기업의 첨단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1975년 5월 발표된 행정명령 11858¹⁾에 의해 설립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는 중동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자본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결과이다. CFIUS의 법적 심사 권한은 기본적으로 「방위생산물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내 개정된 section 721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VIII장의 Title 31상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방위생산물법 section 721을 개정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 (소위 ‘엑슨-플로리오법’, Exon-Florio Amendment)」는 일본의 투자로 인한 첨단 기술 유출 우려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는 「Byrd Amendment」(수정법)을 통해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가 인수 당사자가 되는 거래에 대한 CFIUS의 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에서 높아진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 덕분에, 2007년 「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FINSIA)」를 통해 엑슨-플로리오법의 내용 중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심사기준이 더욱 확대·강화됨과 동시에 의회의 감시 기능 또한 강화되었다.

¹⁾ EXECUTIVE ORDER 11858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3456)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 8월에는 이러한 CFIUS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즉시 발효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2020년 2월 13일에 정식 발효하였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22년 9월 15일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행정명령 14083)”²에 서명하였다. 동 행정명령은 FIRRMA상 규정된 외국인투자 심사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보다 더 구체화하였다. 특히 공급망 탄력성과 미국의 기술 리더십, 사이버 안보 및 민간 데이터의 보호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2022년 10월 20일에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한 CFIUS의 집행 및 처벌에 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³을 발표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투자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CFIUS의 판단 기준 및 처벌 등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최초의 안내서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필요시 업데이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1. CFIUS 근거 규범

유형	발효일	명칭
제정법 (Legislation)	1988년 개정	Section 721 to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1988년 Exon-Florio법에 의해 개정)
	2007.10.24	The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FINSIA)
	2018.8.13. (일부조항 2020.2.13.)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FIRRMA)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975.5.7	Executive Order 11858
	2008.1.23	Executive Order 13456
	2022.9.15	Executive Order 14083

²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³ CFIUS Enforcement and Penalty Guidelines



유형	발효일	명칭
재무부 규칙 (Regulations)	2020.2.13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31 C.F.R. parts 800)
	2020.2.13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31 C.F.R. part 802)
	2020.5.1	FINAL RULE: Definition of "Principal Place of Business"; Filing Fees for Notices of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and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31 C.F.R. parts 800 and 802)
	2020.10.15	Final Rule on Mandatory Declaration Provisions (31 C.F.R. part 800)
	2022.2.4	Final Rule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and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31 C.F.R. parts 800 and 802)
재무부 가이드 라인 (Guidelines)	2022.10.20	CFIUS Enforcement and Penalty Guidelines *법적 구속력 없음

출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처럼 CFIUS의 설립 이후 최근 미국 행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의회에 반영된 결과, FINSA(2007)에서 FIRRMA(2018)로의 입법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정부 또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하여 근거법상 강화된 심사기준 구체화를 도모하였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인 재무부가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더 상세한 운영절차를 제시하게 되었다.

2 CFIUS 개관

1) 조직과 구성

CFIUS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미국 내 외국인 투자 현황을 분석 및 검토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련 부처 합동기관이다.

CFIUS는 재무부 산하에 설치됨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주요 16개의 관계부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9개 부처의 장관들은 정회원으로서 참여하며, 그 외 5개 기관의 대표들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국가정보국장과 노동부 장관은 의결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다.

표2. CFIUS의 조직 구성도

정회원	
- 행정부처 장관(급) - 백악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장	1 (의장) 재무부장관
	2 국무부 장관
	3 국방부 장관
	4 국토안보부 장관
	5 상무부 장관
	6 에너지부 장관
	7 법무장관
	8 무역대표부(USTR) 대표
	9 과학기술정책위원회(OST) 회장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장	1	예산관리국(OMB) 국장
	2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3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4	국가경제위원회(NEC) 보좌관
	5	국토안보위원회(HSC) 보좌관
당연직위원		
- 기타 부서장	1	국가정보국장
- 직무상 권한으로 참가하나 의결권은 없음	2	노동부 장관

출처: FINSA(2007)에 근거한 Executive Order 13456 (2008.1.23.), Section.3

2) CFIUS의 역할과 기능

기본적으로 CFIUS는 ‘대상 거래’나 ‘대상 부동산’을 심사하고, 이러한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에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CFIUS는 또한 이러한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키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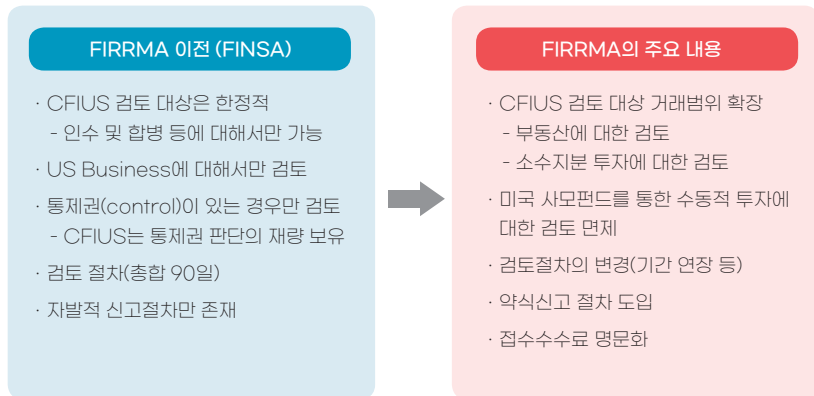
CFIUS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 내에서 소위 ‘지배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 권한을 가져왔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FIUS 조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CFIUS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거래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라도 조사의 위험이 남아있게 된다.

FIRRMA 제정 이후 더욱 확장된 심사 대상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 기준 또한 보다 더 엄격하게 국가안보를 고려하는 쪽으로 발전되었다. CFIUS의 권한 및 역할과 관련된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1>과 같이 기존에 CFIUS의 검토 대상이 되는 거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직접 투자, 인수”일 것을 요했던 반면, FIRRMA에서는 지배권을 갖지 않는 투자, 특히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도 CFIUS의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자발적인 신고 의무뿐 아니라 CFIUS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핵심 기술이나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등 특정한 요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의무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미국 사모펀드를 통한 수동적 투자에 대해서는 검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CFIUS 심사와 관련된 절차적 규범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새로이 도입된

‘약식신고’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미투자자를 고려중인 회사가 5페이지 이내의 약식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하면 CFIUS에서 30일 내에 CFIUS 조사대상 인지 여부를 통지해 주는 절차가 정식신고 절차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추가되었다. 또한 신고절차 기간이 기존에는 1차 검토는 보고서 제출(Voluntary Notice, VN) 및 접수 후 30일 이내에, 2차 검토는 45일 이내, 그리고 3차 대통령 검토의 경우 2주 내에 절차가 완료될 것을 요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1차 검토가 45일로 연장되었다. 다만 기존에는 VN이 제출되더라도 CFIUS에서 접수를 하였다는 통지(소위 “Day 1 Letter”)를 보내야만 기산점이 시작되었고, CFIUS에서 의도적으로 기간 연장을 위하여 접수인으로 하여금 기존의 접수를 철회하고 재접수하여 기산점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였던 관행(소위 “Withdraw and re-file”)을 시정하고자, 개정안에서는 VN 접수 후 10 영업일 안에 접수통지(“Acceptance of written notice”)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Withdraw and re-file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이고 단축된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CFIUS는 여러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인수하는 미국 기업의 기술 혹은 자금이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 특히 최근에는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림1. FIRRMA 제정 후 CFIUS의 권한 · 역할 변화 (요약)





CFIUS의 심사 대상 및 절차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CFIUS) 가이드북

CFIUS의 심사 대상
CFIUS의 심사 절차

1 CFIUS의 심사 대상

FIRRMA(2018) 제정으로 2020년 2월 13일부터 CFIUS의 심사대상은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인 미국 기업을 ‘지배’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거래로 확장되었다.

- 지배(Control)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권한(power)으로서, CFIUS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⁵: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적용을 포함하여,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CFIUS의 심사대상이 되는 투자거래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기업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는 경우로만 한정되었으나, FIRRMA의 제정으로 4가지 유형의 거래(②~⑤)가 심사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기준) ①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을 창설하는 인수 · 합병

(추가) ② ‘비지배적(Non-controlling)’⁶투자*

*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는 TID(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Data) 미국 사업에만 한정하고 규제대상 이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추가) ③ 군기지 또는 민감한 국가안보시설 인근 부동산거래 포함

⁴ FIRRMA, Title II, Sec.201. (2) 참고

⁵ FINSA 및 FIRRMA 내에 국가안보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FINSA에서 국가안보의 해석 범위를 규정한 바 있음. FINSA, Sec.2. (5) 참고

⁶ FIRRMA는 non-control를 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Section2(5)의 control의 법적 정의를 참고 하여 “기업의 중요한 사항에 결정 및 지시에 권한이 없는 투자”로 해석할 수 있음

(추가) ④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변화: 지배권이 생성되는 경우

(추가) ⑤ CFIUS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표3. FIRRMA 제정 전후 CFIUS의 심사대상 변화

	제정 전	제정 후
1	심사대상 지배형 거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	심사대상 지배형 거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
2	-	심사대상 투자 (비지배적투자 및 부동산거래)
3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변화: 지배권이 생성되는 경우
4	-	CFIUS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출처: 31 CFR § 800.213

1) 지배적 투자

FIRRMA 이전부터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직접 투자, 인수”의 경우 CFIUS의 심사대상이 되는 거래로 간주되었다. 지분율 요건 등 명확히 지배권이 인정되는 경우, CFIUS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 CFIUS가 “지배권을 갖는 거래”를 10% 지분 취득의 경우에도 “지배권을 갖는 거래”로 해석을 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만큼, 지배권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다. 결국 CFIUS의 심사대상인 ‘지배적 투자’가 사실상 비지배적 투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으나, FIRRMA 제정 후 비지배적 투자까지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2) 비지배적 투자

FINSA는 지배적 투자를 원칙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은 반면, FIRRMA는 지배권을 갖지 않는 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검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CFIUS 심사 대상의 범위를 △핵심기술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데이터)와 관련한 TID 미국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에 대해서까지 확장시켰다.

구체적으로 FIRRMA는 a) 외국 정부와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가 있는 해외 기관이 TID 사업을 겨냥한 투자, 또는 b) 핵심기술에 대한 지배적 또는 비지배적 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T, 핵심 기술) 「수출통제개혁법(ECRA2018)」상의 신흥·주요 기술 및 기존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술로 정의⁷⁾되며, 해당 핵심기술의 생산, 디자인, 테스트, 제조·제작, 개발 관련 투자를 포함한다.

* 미 상무부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최첨단 기반기술 14개 분야 : △생명공학 △인공지능(AI)과 기계학습기술 △위치, 항법, 타이밍(PNT)기술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최첨단 컴퓨팅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양자정보 및 감지기술 △물류기술 △부가제조기술(3D 프린팅) △로봇공학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최첨단 소재 △최첨단 보안 감시기술⁸⁾

(I, 핵심 인프라) 통신, 유틸리티·에너지, 교통 등 28종류의 국가 핵심 인프라⁹⁾의 소유, 운영, 제조, 공급·서비스에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¹⁰⁾

(D, 민감한 개인정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관리, 수집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¹¹⁾

* 국방 관련 인사 및 국가안보 관련 연방기관 종사자의 금융, 지리 위치, 의료보건, 생체인증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

⁷⁾ 31 C.F.R. § 800.215. (a)-(f)

⁸⁾ 83 FR 58201,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19 November 2019, p.58202

⁹⁾ 31 C.F.R. § 800.212, Appendix A to Part 800

¹⁰⁾ 31 C.F.R. § 800.212

¹¹⁾ 31 C.F.R. § 800.241

그림 2. TID 관련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규정 원문

국가핵심기술 (critical technologies)	· Defense articles or defense services / Specially designed and prepared nuclear equipment, parts and components, materials, software, and technology / Select agents and toxins /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주요 기반기술 (critical infrastructure)	· Systems & assets , whether physical or virtual, so vital to the U.S. that the incapacity or destruction of such systems or assets would have a debilitating impact on national security
민감한 개인정보 (sensitive personal Data)	· Sensitive personal data of United States citizens that may be exploited in a manner that threatens national security.

(거래 규제 대상) FIRRMA 제정 이전에는 CFIUS의 심사절차는 거래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개시되었고, 심사 권한도 다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FIRRMA 제정 이후 CFIUS의 권한이 강화되어 미국 기업에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외국인과의 혹은 외국인에 의한 거래를 “규제 거래 대상(covered control transaction)”으로 분류하여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와 관계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규제 대상)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자산(equity)을 획득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CFIUS 규제 대상이 된다.

- 미국 주요기간산업(TID) 소유의 미공개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 이사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주요기간산업(TID) 이사회의 회원 및 참관 자격이나, 해당 기관의 이사회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
- 의결권 외 주요기간산업(TID)의 실질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미국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핵심 기술, 핵심 인프라 등의 사용, 개발, 공개 등)

단, 외국인이 주요기간산업(TID)에 투자기금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여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이나 그에 상응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투자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된다.



- 해당 기금이 일반 관리자, 관리위원 등을 통해서만 운영될 경우
- 무한 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 관리위원 등이 외국인이 아닐 경우
- 자문위원회 혹은 위원회 등이 ① 해당 기금의 투자 결정, ② 무한 책임 파트너나 관리위원, 혹은 해당 기금이 투자된 단체(entity)에 의해 결된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없는 경우
- 해당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투자기금 자체와 무한 책임 파트너나 관리위원, 혹은 해당 기금이 투자된 단체(entity)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결정 및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이들의 보수(compensation)를 독단적으로 결정, 선택, 기각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 자문위원회 등에 참여를 통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물리적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투자자 동 외국인 투자자에 “투자 규제 대상”의 정의에서 규정된 어떠한 접근, 권리, 관여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의무 대상)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이 관련되어 있거나 미국 주요기간산업(TID)에 대해 외국 정부의 “상당한 이해”가 관여된 아래의 거래의 경우 CFIUS 신고 의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미국 주요기간산업(TID)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당 거래에 관여되었거나 해당 기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transfer), 재이전(retransfer) 할 때 미국의 규제 허가(regulatory authorization)가 필요한 경우
- 외국 정부와 “상당한 이해관계에 놓인 외국인”*에 의해 “상당한 이해”**의 인수가 수반되는 특정 투자의 경우
 - * 직/간접적인 의결권이 최소 49%인 경우로 정의
 - ** 직/간접적인 의결권이 최소 25%인 경우로 정의

다만 CFIUS는 ‘CFIUS 규정(Regulation)’의 개정¹²을 통해 2020년 상기 핵심기술 관련 심사의 예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 안보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신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022년 1월 미국 재무부는 예외국가에 관한 최종규칙(Final rule)¹³을 확정하였다.

¹² 31 C.F.R. Part 800, part 801

¹³ Final Rule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and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31 C.F.R. parts 800 and 802)

- **(예외국가)** 국가안보 위험 투자에 대하여 '강건한 평가절차(robust process to analyze)'¹⁴를 갖추고 미국의 투자안보정책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2020년 2월 13일부터 3국(호주, 캐나다, 영국), 2022년 1월 5일부터 뉴질랜드가 지정되었다.¹⁵
- **(예외투자자)**¹⁶ 예외국가의 국민, 예외국가의 정부 중에서도 다음의 5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예외국가의 조직이 '예외투자자'로서 지정되어 있다. 다만 5가지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제재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¹⁷ 등에 등재되었거나 CFIUS 및 미국 정부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법률 하에 형성된 조직일 것
- ② 예외국가 또는 미국 안에 주사무소가 있을 것
- ③ 이사회 75% 이상이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국민일 것
- ④ 10% 이상의 의결권 등을 보유한 경우
 - a) 예외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 b) 예외국가의 정부이거나
 - c) 예외국가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이어야 할 것
- ⑤ 예외국가 또는 미국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로서 50% 초과 의결권을 확보하거나 기타 조직의 경우 80% 이상을 확보할 것

¹⁴ 31 CFR § 800.1001 – Determinations.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The Committee may determine at any time that a foreign state has established and is effectively utilizing a robust process to analyze foreign investments for national security risks and to facilitat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matters relating to investment security

¹⁵ CFIUS Excepted Foreign State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cfius-excepted-foreign-states>) 참조

¹⁶ 31 C.F.R. § 800.219 (2020.1.17.) Provisions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¹⁷ 미국이 지정한 소위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자'의 목록



3) 부동산 거래

CFIUS의 심의 범위가 부동산 투자거래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군기지 및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시설¹⁸⁾에 인접한 토지의 투자거래^{**} 또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¹⁹⁾ FIRRMA 이전에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삼은 반면, FIRRMA로 인한 권한 확대 이후 외국인투자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이라도 외국인의 사적 또는 공적 부동산 매입 · 임대 · 양도 거래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 항구, 공항 내에 위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일부가 되는 경우로 교통요지, 군시설 및 정부시설 소재의 부동산 등을 포함

** 부동산 거래 행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 임대, 양도 거래를 일컬으며, CFIUS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개인 주택 및 도시 지역의 부동산은 제외

표4. 심사대상 부동산 (규정 원문)

(a)	located within, or will function as part of, a covered port; or
(b)	Is located within:
	(1) Close proximity of any military installation described in § 802.227(b) to (o), or another facility or property of the U.S. Government, in each case as identified in the list at part 1 or part 2 of appendix A to this part;
	(2) The extended range of any military installation described in § 802.227(h), (k), or (m), as identified in the list at part2 of appendix A to this part;
	(3) Any county or other geographic area identified in connection with any military installation described in § 802.227(a), as identified in the list at part 3 of appendix A to this part; or
	(4) Any part of a military installation described in § 802.227(p), as identified at part 4 of appendix A to this part, to the extent located within the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of the United States.

자료: 31 CFR § 802.211 Covered real estate

¹⁸⁾ 31 C.F.R. Part 802, 군사 시설은 40개 주와 괌에 산재하여 있는 190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함

¹⁹⁾ 31 C.F.R. Part 802

특히 부동산 거래가 CFIUS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간접적으로 ‘그린 필드 투자’²⁰ 사업에 대한 CFIUS 심사 권한이 신설²¹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CFIUS는 ‘CFIUS 규정(Regulation)’의 개정²²을 통해 2020년 상기 부동산 관련 심사의 예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안보정책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의 투자자인 경우 신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022년 1월 미국 재무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예외국가의 최종규칙(Final rule)²³을 확정하였다.

- (예외국가) 국가안보 위험 투자에 대하여 ‘강건한 평가절차(robust process to analyze)’를 갖추고 미국의 투자안보정책에 협력하는 국가로서, 2020년 2월 13일부터 3국(호주, 캐나다, 영국), 2022년 1월 5일부터 뉴질랜드가 지정되었다.²⁴

4) CFIUS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상기 유형 거래 이외에도 CFIUS 검토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유형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동적 투자의 경우 CFIUS 검토 권한이 제한되며,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간접투자가 존재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CFIUS 검토대상이 아니다.

- 외국인이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거나 또는
- 외국인이 단순히 자문위원이나 기금위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 자금이 전적으로 미국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에 의해서만 운용되는 경우

²⁰ 그린필드 투자: 외국인 투자 시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

²¹ 기존 CFIUS 조사대상에는 부동산 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CFIUS의 투자심사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나, FIRREA 제정으로 상 부동산 거래가 심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그린필드 형태로 투자 시(즉 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시), CFIUS가 기업의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린필드 투자 전반에 간접적으로 CFIUS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

²² 31 C.F.R. Part 802

²³ Final Rule Pertaining to Certain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by Foreign Persons and Certain Transactions by Foreign Persons Involving Real Estate in the United States (31 C.F.R. parts 800 and 802)

²⁴ CFIUS Excepted Foreign State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cfius-excepted-for-foreign-states>) 참조

2 CFIUS의 심사 절차

1) 심사 절차 개관

CFIUS의 심사 절차는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²⁵,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제언하는 선언이나 서면 통지를 수신한 이후 세 단계를 통해 진행된다.

CFIUS는 거래 종료 이후 등 어느 시점에라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유예, 중단 등의 구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위험”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거래 건의 경우에는 거래 종료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신고 의무 대상자가 거래가 완료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약식신고(declaration) 혹은 정식신고(written notic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 가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FIUS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 조사내용 및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CFIUS는 언제든지 해당 투자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정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승인 반복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된다.

(1단계: 비공식 심사) 공식 심사 이전 잠재적 문제의 식별을 위한 절차로 CFIUS는 공식 서류 작성에 앞서 개별 CFIUS 구성원이 불특정 기간 동안 비공식 심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²⁵ 기업이 외국 인수합병을 CFIUS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의 매각조치 및 기타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자발적인 심사 절차를 준수함

(2단계: 공식심사 절차)

- ① **약식신고**: 미국에 투자를 고려 중인 외국회사는 정식신고(written notice) 접수 이전에 이를 대신하여 5페이지 이내의 약식신고(declaration)를 CFIUS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CFIUS가 30일 이내에 조사대상 여부를 통지해주는 절차를 도입하였다.²⁶ CFIUS는 약식 신고에 대해 검토한 후 재량에 따라 다시 정식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다.
- ② **신고접수**: 투자 당사자의 자발적인 '정식신고(written notice)'²⁷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 a) 외국 정부가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를 직간접적으로 갖는 TID 사업에 대한 투자, b) 핵심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²⁸
 * 실질적 이해(substantial interest)²⁹: 외국인과 미국 사업체 사이의 25%, 외국 정부와 외국인 사이의 49% 이상의 의결권
- ③ **국가안보 1차심사**: CFIUS는 투자가 국토안보, 중요 인프라 및 핵심기술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 거래로 미국 법인에 대한 외국 지배력이 발생하는 경우 **45일간 국가안보검토**를 진행한다.
- ④ **국가안보 2차심사**: CFIUS의 구성원이 외국인 투자거래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거래는 **45일 동안 추가적**으로 더 포괄적인 국가안보 조사³⁰의 대상이 된다.

(3단계: 대통령 결정) CFIUS는 국가안보 조사결과에 따라 합병, 매입 및 인수 등에 중단 및 금지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대통령에게는 최종적으로 15일간 결정 기간이 부여된다.

²⁶ FIRRMA SEC.1706. (V)

²⁷ Section 721(b)(1)(C)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²⁸ FIRRMA SEC.1706. (IV) 참고

²⁹ FIRRMA SEC.1706. (IV), (bb), (BB) 참고

³⁰ 해당 조사과정에 있어 CFIUS 및 투자거래자는 국가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중재절차를 개발하고 채택할 수 있음



표5.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절차

1단계: 비공식 심사

CFIUS는 신고 접수된 투자의 잠재적 문제 식별을 위해 불특정 기간 동안 비공식 심사 실시 가능



2단계: 공식심사

신고접수	30일	• 약식신고(declaration)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음 (선택)
	-	• 투자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심사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
국가안보 1차 심사	45일	•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국토안보에의 위협 여부 심사 *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검토기간으로 20~30일 추가 가능
국가안보 2차 심사	45일 ~ 60일	• 주요 점점 검토 및 협의, 허가조건 부여 • 필요시, 완화조치 협의 및 임시 보호조치 설정 등 * 예외 상황시, 15일 연장가능



3단계: 대통령 결정(15일)

- 투자거래에 대한 중단 및 금지 결정
- 거래 완료된 투자에 대한 철회 결정

자료: CRS, 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심사 고려 요소

기존 FINSA(2007)는 안보위험 여부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12가지를 제안했으나, FIRRMA(2018)는 의회 결의안을 반영한 6가지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여 총 18가지 심사요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12가지 요소 중, CFIUS는 대통령에게 거래를 저지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요소로서 투자자 핵심 인프라*나 핵심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핵심 인프라(정의)³¹: 미국의 중요 시스템이나 자산으로, 그러한 시스템의 약화나 자산의

³¹ 핵심인프라 법적 정의 원문은 FINSA section 2, 6. 참고

파괴가 국가의 경제 안보와 국민의 공공 보건 또는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 핵심기술(정의)³²: 국방안보에 필수적인 중요기술, 중요부품 또는 중요기술 항목을 의미하며, 「수출통제개혁법(ECRA2018)」이 적용되는 신흥·기반 기술 및 기타 수출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 기술도 포함

표6. FIRRMA의 국가안보 위험 심사 시 고려 요소

FINSA	1	예상되는 국방요건에 필요한 국내생산
	2	인적자원, 제품, 기술, 원자재 및 기타 공급물자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의 역량 및 능력
	3	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 및 상업 활동 통제
	4	군사 물품, 장비, 기술을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국가나 미사일 기술 또는 생화학 무기의 확산국에 판매할 잠재적 가능성
	5	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적 효과
	6	주요 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적인 기간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7	미국의 핵심적인 기술(critical technologies)에 대한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영향
	9	대상이 되는 거래가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인가의 여부
	10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의 경우, 이 외국 정부가 반테러, 무기의 비확산, 수출 통제에 있어 미국과 공조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여부
	11	에너지 및 여타 핵심적인 자원과 물자에 관한 미국의 장기적인 수요 요건
	12	기타 대통령이나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FIRRMA (6가지 신설요인)	13	미국의 기술 분야 리더십에 대한 영향 여부
	14	중요 기간산업 에너지 자원, 중요 자료 또는 중요 기술을 포함한 최근 거래 경향 또는 그 누적적 지배의 잠재적인 국가안보 관련 영향
	15	미국 국내 법령 준수 기록
	16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미국 산업 및 상업활동에 대한 지배 여부
	17	미국 시민의 유전자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외국인 투자자 공개 여부
	18	사이버 보안상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지 여부

출처: CRS, 2020 &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

³² 핵심기술 법적 정의 원문은 FINSA section 2, 7. 및 HR 5841 EH p.19-20 참고



CFIUS는 국가안보 위협 평가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석한다.³³

- (위협 분석) 외국인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 위협을 일으킬 능력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가에 대한 위협을 분석
- (취약성 분석) 미국의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비즈니스의 특성이나 시스템, 조직, 또는 구조상의 취약성에 대해 분석
- (리스크 분석) 해당 거래 결과로 위협과 취약성이 표면화되었을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년 9월 15일자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행정명령 14083)³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 고려 요소를 구체화하여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따라서 CFIUS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아래 기준 또한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행정명령은 기존의 심사 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일 뿐, CFIUS 심사 근거법(방위생산물법 section 721)상 관할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① 공급망: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탄력성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 ② 미국 기술 리더십: △초소형전자공학(ME)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컴퓨팅 △청정에너지 △기후 적응 기술 관련 산업에의 영향
- ③ 산업투자 동향: 특정 분야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동향 전체
- ④ 사이버안보: 외국인 투자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사이버 침입 및 악의적 활동 등) 여부
- ⑤ 민간데이터: 외국인 투자로 인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접근 및 이용가능성

3) CFIUS의 심사 이후 조치

CFIUS는 외국인 투자를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투자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³³ CRS. 2020.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³⁴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2022.9.15.)

- ① **승인(Written confirmation)** CFIUS의 승인을 받은 거래는 추가적인 CFIUS 심사로부터 셰이프 하버(safe harbor)를 확보하지만, 기타 미국 법률 당국의 법적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 해당 거래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 다른 미국 법률이 그러한 위험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
- ② **완화계약(Mitigation agreement)** CFIUS는 심사 과정 도중 해당 거래에서의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거래 당사자간의 완화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완화조치 예시
 - 연례 보고서 및 독립적 회계감사(audits) 등 필수 조치 준수를 위한 기업 보안 위원회 (corporate security committee), 보안 담당자 및 기타 메커니즘 구축
 - 미국인만이 특정 제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도록 요구
 - 특정 활동 및 제품이 미국에만 위치하도록 요구
 - 특정 기업 정보 또는 기술에 대한 외국인 접근 제한
 - 외국인의 미국 기업 방문 이전 관련 정부기관에 사전 통지
 - 미국 사업의 특정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 법인(proxy entity)을 요구
 - CFIUS는 거래 검토 과정 중간에 임시완화조치(interim mitigation measures)를 부과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 완화조치가 부과되면, CFIUS는 거래 당사자들의 완화계약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③ **거절(Reject a filing)**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완화할 수 없는 위험(immitigable risk)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다음의 경우 CFIUS는 투자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미완성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CFIUS의 추가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동 거래에 실질적(material)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고한 정보와 조사한 정보가 상이한 경우 거절
- ④ **대통령에 거래 금지 및 차단 권고** 기타 완화조치 또는 미국 법률을 통해서 국가안보 위험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거래당사자들이 투자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CFIUS는 대통령에 국가안보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거래 금지/차단/철회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위 행정기관인 CFIUS가 제시하는 권고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4) CFIUS의 이행 및 처벌 조치

미국 재무부가 2022년 10월 20일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한 CFIUS의 집행 및 처벌에 대해 발표한 가이드라인³⁵에 따르면, 심사 이후 조치와는 별개로 CFIUS는 다음과 같이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관련 민·형사적 처벌 조치와는 별개로 적용 가능하며, CFIUS는 또한 다른 관련 정부 기관에 이행 권한을 위탁할 수도 있다.

① 위반 유형:

- 신고 불이행(failure to file): 신고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약식신고(declaration)나 정식신고(notice)를 적정 시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완화계약 미준수(non-compliance with 'CFIUS Mitigation'): CFIUS는 거래당사자의 완화 협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들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완화계약 또는 계약 조건을 실질적으로(materially) 위반하는 경우, CFIUS는 이미 심사한 거래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검토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정보의 허위 기재, 누락 또는 허위 인증(material misstatement, omission, or false certification): CFIUS의 심사 절차, 조사, 완화계약 협의 중 관련 정보에 있어서 허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무 위반으로 간주한다.

② **CFIUS의 정보 수집원:** 의무 위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정보의 요청(requests for information)에 의하거나, 의무 위반이 의심될 수 있는 경우 대상인이 직접 자발적 신고(self-disclosures)를 하거나, 또는 제3자가 의무 위반의 정황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보(tips)함으로써 수집되는 정보를 근거로 판단한다.

③ **처벌 절차:** 처벌대상자에게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서면 설명 및 벌금 부과 금액 등 처벌 관련 내용 통지(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고려된 가중 및 감경 요소 포함) → 대상자는 벌금 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변론, 정당성, 감경요인 등을 포함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심 신청 정상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심 진행 후 최종 결정 / (재심 신청 미 접수 시) 최종 처벌 결정에 대한 통지

³⁵ CFIUS Enforcement and Penalty Guidelines

④ 처벌 수위 결정 요소

- 책임 및 준수
- 미국 국가 안보에 입힌 피해 정도
-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부주의, 인지, 의도성 등
- 위반의 지속성 및 타이밍
- 대응 및 교정
- 준수의 정교성 및 기록

⑤ **처벌 유형 및 수준:** 상기 비구속적인 가이드라인 규정과는 별개로 재무부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regulations)에 따르면,³⁶ \$250,000 또는 거래 가치 금액 중 더 많은 기준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의 결정은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대상자는 15일 이내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표 7. FIRRMA 도입 전후 투자심사제도 변경 사항 요약

구분	기존	변경
근거 법령	「FISMA」	「FIRRMA」
주관기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신고 유형	자발적 신고	자발적 신고 특정 거래에 한하여 의무 신고
심사대상	·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을 창설하는 인수 · 합병	·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권을 창설하는 인수 · 합병 · TID 관련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Non-controlling) 투자 · 군기지 또는 민감한 국가안보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변화: 지배권이 생성되는 경우 · CFIUS 검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유형의 거래

³⁶ 31 CFR § 800.901 – Penalties and damages



구분	기존	변경
심사 요인	· 국방요건에 필요한 국내생산 · 국방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의 역량 · 외국인의 국내 산업 및 상업 활동 통제 · 위험국가에 군사장비, 기술 판매 가능성 · 미국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적 효과 ·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 미국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인지 · 위의 경우, 외국정부가 미국과 공조적 입장인지 · 핵심적인 자원과 물자에 관한 미국의 장기적인 수요 요건 · 기타 대통령/위원회 판단 요소	· 국방요건에 필요한 국내생산 · 국방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의 역량 · 외국인의 국내 산업 및 상업 활동 통제 · 위험국가에 군사장비, 기술 판매 가능성 · 미국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적 효과 ·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 미국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인지 · 위의 경우, 외국정부가 미국과 공조적 입장인지 · 핵심적인 자원과 물자에 관한 미국의 장기적인 수요 요건 · 기타 대통령/위원회 판단 요소 · 미국 기술 분야 리더십에의 영향 여부 · 중요 기간산업 및 기술에 대한 거래경향 및 누적지배의 국가안보 관련 영향 · 미국 국내 법령 준수 기록 ·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산업 및 상업 활동에 대한 지배 여부 · 민감 정보의 외국인 투자자 공개 여부 · 사이버 보안상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하는지 여부
심사절차	① 비공식심사→ ② (공식)국가안보 1차심(30일)→ ③ (공식)국가안보 2차심(45일)→ ④ 대통령결정(15일)	① 비공식심사→ ② (약식)신고절차(30일)(선택)→ ③ (공식)국가안보 1차심 (45일)→ ④ (공식)국가안보 2차심(45일)→ ⑤ 대통령결정(15일)



최근 CFIUS
심사 사례 분석
(2020년 2월 이후)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CFIUS) 가이드북

CFIUS 심사가 승인된 사례
CFIUS의 조사가 종료된 사례
CFIUS의 심사 승인이 거부된 사례
CFIUS 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

1 CFIUS 심사가 승인된 사례

기본적으로 CFIUS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심사하게 되므로, 모든 심사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사례들의 경우 언론 자료 등을 통하여 일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검색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존재하는 사례들을 CFIUS 심사 결과별로 정리하였다.

1) 사례

● Duddle Street Acquisition 및 Maso Capital와 FiscalNote의 사업결합 사례³⁷

기본정보

- 인수자: Duddell Street Acquisition Corporation (미국)
Maso Capital (홍콩, 중국)
- 피인수자: FiscalNote Holdings, Inc. (미국)
- 규모: 13억 달러
- 산업: 소프트웨어, 미디어

• 타임라인

- (2021.11.8) FiscalNote와의 인수합병 계약 체결 발표, 합병된 회사는 FiscalNote의 이름으로 운영됨.
- (2022.6.6) CFIUS 승인

³⁷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duddell-street-acquisition-corp-us-maso-capital-hong-kong-sar-china>



• 주요내용

Duddle Street Acquisition社 및 Maso Capital의 FiscalNote社와의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³⁸ 거래는 의무신고 대상 및 CFIUS의 의무심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양社は (1) FiscalNote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非공공 통신 데이터로 인해 31 C.F.R. § 800.248에서 정의된 'TID US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높으며, (2) 스폰서인 Duddell Street Holdings Limited가 합병 회사인 FiscalNote의 이사 2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CFIUS가 동 사업결합에 대해 심사 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s)로서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CFIUS에 동 거래를 신고했다.³⁹ 아울러, 양社 간의 사업결합계약서에는 스폰서社(Duddell Street Holdings Limited)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CFIUS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했다.⁴⁰

● SK에코플랜트社의 불룸에너지社 투자 사례⁴¹

기본정보

- 인수자: SK ecoplant Co., Ltd. (한국)
- 피인수자: Bloom Energy Corporation (미국)
- 규모: 5억 달러
- 산업: 에너지

• 타임라인

- (2021.10.31) 지분매매계약(Securities Purchase Agreement) 체결
- (2021.12.29) CFIUS 승인
- (2021.10.30) 1차 투자 완료 - RCPS(상환전환우선주) 1,000만 주 취득

³⁸ 참고: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754

³⁹ 참고: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23466/000110465922023084/filename1.htm>

⁴⁰ 참고: https://www.sec.gov/ix?doc=/Archives/edgar/data/1823466/000110465921135294/tm2132074d3_8k.htm

⁴¹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sk-ecoplant-co-ltd-and-bloom-energy-corporation>

- (2022.8) 2차 투자로 보통주 1,348만주 매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 후 곧 투자를 완료할 계획⁴²

• 주요내용

SK에코플랜트社は 블루에너지사의 주식을 2개의 투자계층(tranche)에 걸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FIUS 승인은 1차 투자 완료를 위한 상호간의 공동 조건이었다. SK에코플랜트社は 별도의 부정적 의견 없이 CFIUS의 승인을 받은 이후 2022년 8월 10일 블루에너지社の RCPS(상환전환우선주) 1,000만 주를 1차로 인수하였으며, 이후 블루에너지社の 클래스A 보통주 1,349만 1,701주를 추가로 인수할 계획이다.

● SK하이닉스社の Intel 낸드 사업부 인수 사례⁴³

기본정보

- 인수자: SK hynix Inc. (한국)
- 피인수자: NAND business of Intel Corporation (미국)
- 규모: 90억 달러
- 산업: 반도체

• 타임라인

- (2020.10.20) SK하이닉스, Intel社の 낸드 사업부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Purchase Agreement) 체결
- (2021.3.12) CFIUS 승인
- (2021.12.22)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 인수에 대한 합병 승인⁴⁴

⁴² 참고: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11021608303280109180&lcode=00> ;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46650>

⁴³ 참고: <https://www.tradepractitioner.com/2021/06/cfius-sk-hynix-intel-nand/>

⁴⁴ 참고: <https://www.mk.co.kr/news/world/10147435>



- (2021.12.30) 총 계약금 90억 달러 중 70억 달러를 인텔에 선지급⁴⁵
- (2025.3) 잔금(20억 달러) 지급 후 인수계약 최종 마무리할 예정

• 주요내용

양社 간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동 건에 대한 반독점 심사가 착수되었다. 미국의 경우, CFIUS와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등의 2개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FTC는 2021년 5월 27일 반독점 심사 통과를 발표했다.

○ TELUS社の Lionbridge社の 인공지능 사업부 인수 사례⁴⁶

기본정보

- 인수자: TELUS International (Cda) Inc. (캐나다)
- 피인수자: Lionbridge AI business of Lionbridge Technologies, Inc. (미국)
- 규모: 9억 3,900만 달러
- 산업: 인공지능; 정보 서비스

• 타임라인

- (2020.11.6) TELUS International, Lionbridge社の 인공지능(AI) 사업부인 Lionbridge AI를 인수하는 주식인수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체결
- (2020.11.6 ~ 2021.1.9) 약식신고(declaration) 제출, CFIUS 심의 후 정식 Notice 제출 요청
- (2021.1.9) CFIUS에 정식 Notice 제출 및 CFIUS가 요구한 추가 정보 제공
- (~2021.3) 심사 만료 기간(~2021.3 (Notice 제출일로부터 45일))전 CFIUS 승인
- (2020.12.31) 인수 완료

⁴⁵ 참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257>

⁴⁶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telus-international-cda-inc-and-lionbridge-technologies-inc>

• 주요내용

TELUS社와 Lionbridge社의 약식신고(declaration) 제출 이후, CFIUS는 30일의 심의기간 이후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DPA)의 제721조에 근거하여 정식 notice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추가 검토는 TELUS社의 Lionbridge AI의 인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TELUS社가 특정 해외 네트워크 인프라 벤더와 맺은 특정 상업적 관계(Commercial Relationship)에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社は 2021년 1월 정식 notice를 CFIUS에 공동 제출하였고, CFIUS는 조사 만료기간 전 매각을 승인했다.

○ Learning Technologies 그룹의 GP Strategies社 인수 사례⁴⁷

기본정보

- 인수자: Learning Technologies Group (영국)
- 피인수자: GP Strategies Corporation (미국)
- 규모: 3억 9,400만 달러
- 산업: 프로페셔널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건설

• 타임라인

- (2021.7.15) 인수계약 체결
- (2021.7.26) CFIUS에 자발적 Notice 제출
- (2021.10.7) CFIUS 승인

• 주요내용

CFIUS의 승인은 양社 간의 인수 계약 종결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자발적 신고 이후 투자가 승인되었다.

⁴⁷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learning-technologies-group-and-gp-strategies-corporation>



○ GIC의 STORE Capital 인수 사례⁴⁸

기본정보

- 인수자: GIC Private Limited (싱가포르)
Blue Owl Capital (미국)
- 피인수자: STORE Capital Corporation (미국)
- 규모: 140억 달러
- 산업: 부동산

• 타임라인

- (2022.9.15) GIC社, Store Capital 인수 계약 체결
- (2022.12.6) STORE Capital, CFIUS의 거래승인 발표

• 주요내용

CFIUS의 승인은 양 社 간의 인수 계약 종결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자발적 신고 이후 투자가 승인되었다.

○ Advent International社의 McAfee社 인수 사례⁴⁹

기본정보

- 인수자: Advent International Corporation (미국)
- 피인수자: McAfee Corporation
- 규모: 140억 달러
- 산업: 사이버안보; 소프트웨어

⁴⁸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gic-private-limited-and-store-capital-corporation>

⁴⁹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ifus-clearance-advent-international-corporation-and-mcafee-corp>

- 타임라인

- (2021.11.8) 인수계약 체결
- (2022.2.22) CFIUS, 국가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 (2022.3.1) 인수 완료

- 주요내용

CFIUS의 승인은 양 社 간의 인수계약 종결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자발적 신고 이후 투자가 승인되었다.

◉ Macquarie 그룹의 Waddell & Reed Financial 인수 사례⁵⁰

기본정보

- 인수자: Macquarie Group Limited (호주)
- 피인수자: Waddell & Reed Financial, Inc. (미국)
- 규모: 17억 달러
- 산업: 금융서비스

- 타임라인

- (2020.12.2) 인수계약 체결
- (2021.1.28) CFIUS에 자발적 Notice 제출
- (2021.2.4) CFIUS, Notice 접수
- (2021.3.22) CFIUS, 45일 간의 심사 이후 승인

- 주요내용

CFIUS는 동 투자 건에 대하여 국가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⁵⁰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macquarie-group-and-waddell-reed-financial>



○ Just Eat Takeaway社의 Grubhub社 인수 사례⁵¹

기본정보

- 인수자: Just Eat Takeaway.com N.V. (네덜란드)
- 피인수자: Grubhub Inc. (미국)
- 규모: 73억 달러
- 산업: e-Commerce; Food Services

• 타임라인

- (2020.7.10) 합병계약 체결
- (2020.7.21) CFIUS에 자발적 Notice 제출
- (2020.9.3) CFIUS 승인
- (2021.6.15) 인수 완료

• 주요내용

CFIUS는 동 투자 건에 대하여 국가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 Toyota Motor社의 CARMERA社 인수 사례⁵²

기본정보

- 인수자: Toyota Motor Corporation (일본)
- 피인수자: CARMERA, Inc. (미국)
- 규모: 비공개
- 산업: Autonomous Vehicles

⁵¹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just-eat-takeawaycom-and-grubhub>

⁵²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toyota-motor-corporation-and-carmera-inc>

- 타임라인

- (2021.8.18) (CFIUS 승인 후) 인수 완료

- 주요내용

CFIUS는 동 투자 건에 대하여 국가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의 Vonage Holdings社 인수 사례⁵³

기본정보

- 인수자: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스웨덴)
- 피인수자: Vonage Holdings Corporation (미국)
- 규모: 62억 달러
- 산업: 통신

- 타임라인

- (2021.11.22)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와 Vonage Holdings社, 인수계약 체결
- (2021.12.29) 약식신고(declaration) 제출
- (2022.7.15) CFIUS 승인⁵⁴

- 주요내용

CFIUS는 동 투자 건에 대하여 국가 안보상 우려가 없음을 판단하여 승인하였다.

⁵³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ending-cfius-filing-telefonaktiebolaget-lm-ericsson-and-vonage-holdings-corp>

⁵⁴ 참고: <https://www.ericsson.com/en/press-releases/2022/7/ericsson-receives-regulatory-approval-to-complete-acquisition-of-vonage>



○ Tiga Acquisition社の Grindr Group LLC 인수 사례⁵⁵

기본정보

- 인수자: Tiga Acquisition Corp (싱가포르)
- 피인수자: Grindr Group LLC
- 규모: 3억 8,400만 달러
- 산업: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 타임라인

- (2022.5.9) 테이트 앱 회사인 Grindr社와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인 Tiga Acquisition社 인수합병 계약 체결 발표
- (2022.8.7) 자발적 Notice 제출
- (2022.8.7~10.21) CFIUS 1차 심사
- (2022.10.24) CFIUS 2차 심사 시작
- (2022.11.14) CFIUS 심사 완료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인수합병 계약의 종결 조건인 CFIUS 승인 조건을 철회했음
- (2022.11.18) 인수합병 완료
- (2022.12.6) CFIUS 승인 예정

• 주요내용

양 社 간의 인수계약 체결 시 CFIUS의 승인은 인수 종결 조건이었다. 거래 당사자는 지난 Kunlun社의 Grindr社 인수거래에 대한 CFIUS의 매각명령 사례를 통해 CFIUS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자발적 Notice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개된 자료상 CFIUS의 승인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심사 완료 이전에 CFIUS 승인 조건이 철회됨에 따라 인수합병이 먼저 완료되었다.

⁵⁵ 참고: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fius-clearance-tiga-acquisition-corp-and-grindr-group-llc>

(참고) CFIUS, Kunlun에 Grindr社 매각 명령

2016년 중국의 Kunlun社가 Grindr社의 지분 60%를 인수한 후 2018년 나머지 지분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Kunlun社로 인해 미국의 Grindr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한 CFIUS가 Kunlun社에 Grindr社를 2020년 까지 매각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2020년 3월 Kunlun社는 Grindr 지분 98.58%를 미국 San Vincente Acquisition LLC에 매각했다.⁵⁶

2) 평가

● CFIUS의 승인, 인수 계약서상 인수거래 완료의 필요조건?

상기 CFIUS가 투자를 승인한 인수계약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수거래 완료의 조건으로 CFIUS의 승인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FIRRMA 제정 이후 CFIUS의 권한이 강화되어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CFIUS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무 심사의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 완료 이후에 CFIUS가 직권으로 심사를 진행하거나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수계약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양社 간의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CFIUS 승인을 계약 완료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약식신고(declaration)를 제출할 것인가 정식신고(written notice)를 제출할 것인가?

TELUS社의 Lionbridge社 인수사례를 통해 약식신고(declaration)와 정식신고(written notice)의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 약식신고는 정식신고에 비해 접수 이전의 절차가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짧은 심의 기간을 거쳐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당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CFIUS가 약식신고를 검토한 이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에 정식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다시 정식신고를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적인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⁵⁶ <https://www.latimes.com/business/technology/story/2020-03-06/grindr-sold-by-chinese-owner-after-us-national-security-concerns>

표8. 약식신고와 정식신고의 비교⁵⁷

	신고 형식	
	약식신고(declaration)	정식신고(written notice)
접수 이전	CFIUS의 자문 또는 사전 검토 작업 없음.	거래 당사자는 Notice 접수 이전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사항이 권장됨. ⁵⁸ i) Notice 제출 전 CFIUS와 상의할 것 ii) CFIUS에 초안 Notice를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를 설명하는 기타 적절한 문서를 CFIUS에 제출할 것
심의 기간	30일 이내	최장 115일 - 검토: 45일 - (필요시) 심의 연장: 45일 - (필요시) 대통령 검토: 15일

⁵⁷ 참고: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cfius-overview>

⁵⁸ 참고: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voluntary-notice-filing-instructions-part-800>

2 CFIUS의 조사가 종료된 사례 (승인과 유사)

1) 사례

● Fufeng 그룹의 Grand Forks Air Force 기지 근처 부동산 매입 사례⁵⁹

기본정보

- 인수자: Fufeng Group (중국)
- 피인수대상: Grand Forks Air Force 기지에서 12마일 떨어진 370 acre
- 규모: 3억 8,400만 달러
- 산업: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 타임라인

- (2021) Fufeng 그룹, Grand Forks 공군기지에서 12마일 떨어진 토지 370 에이커(acre) 매입
- (2022.9 중순) CFIUS가 Fufeng 그룹의 상기 토지매입에 대해 검토하기 전 Fufeng 그룹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자 Grand Forks시(市)에서 'Fufeng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전면 중단⁶⁰
- (2022.10) CFIUS, Fufeng 프로젝트 심사 결정
- (2022.10 ~ 2022.12) CFIUS, 제1,2차 국가안보 심사 진행
- (2022.12.12) CFIUS, 심사 완료 후 해당 프로젝트의 토지 거래가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

⁵⁹ 참고: <https://www.inforum.com/news/north-dakota/after-cfius-announcement-on-fufeng-project-everyone-waiting-for-next-steps>

⁶⁰ 참고: <https://www.grandforksherald.com/news/local/year-long-fufeng-debate-over-controversial-proposed-corn-plant-named-heralds-2022-news-story-of-the-year>



• 주요내용

CFIUS의 심의 범위가 부동산 투자거래까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주요 군기지 및 기타 민감한 국가안보 시설에 인접한 토지의 투자거래 또한 심사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R-FL),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R-ND), 존 호븐(John Hoeven, R-ND)은 “Fufeng 그룹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공산당의 미국 공군기지에 대한 감시 또는 미국의 군사 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CFIUS에 동 토지거래 건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⁶¹ CFIUS는 총 3개월 이상의 1차 및 2차 심사를 거친 후 성명을 통해 Fufeng의 이번 토지 거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제721조 상의 심사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s)가 아니므로 CFIUS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⁶²

2) 평가

● CFIUS 신고할까? 말까?, 비용-편익 분석 통해 결정해야

FIRRMA 제정으로 CFIUS의 심사범위가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CFIUS가 심사 권한이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사업까지 확장되었다. 그로 인해 기존보다 확장된 범위에 속하는 투자거래 건은 CFIUS 관할권의 적용대상 여부를 놓고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Fufeng社の 사례에서도 Fufeng社の 자발적인 CFIUS 신고가 없었음에도 미국 의원의 심리 요청으로 CFIUS 심사가 개시되었다. CFIUS는 Fufeng社の 부동산 거래 건이 CFIUS의 관할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CFIUS의 심사가 시작되며 Fufeng社の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이 전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 3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다. CFIUS에 신고를 위한 문서 작성 및 전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과 프로젝트 또는 투자거래 건의 안정성을 면밀히 비교 계량하여 CFIUS 신고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⁶¹ 참고: <https://www.rubio.senate.gov/public/index.cfm/2022/7/rubio-cramer-hoeven-call-for-national-security-review-of-fufeng-farmland-purchase>

⁶² 참고: <https://knoxradio.com/2022/12/13/fufeng-looks-forward-to-building-gf-plant-after-cfius-says-it-has-no-jurisdiction/>

3 CFIUS의 심사 승인이 거부된 사례

1) 사례

- 중국계 투자사 와이즈로드 캐피털(Wise Road Capital)의 매그나칩(Magnachip) 인수 승인 거부⁶³

기본정보

- 인수자: Wise Road Capital (중국)
- 피인수자: Magnachip Semiconductor Corporation (미국)
- 규모: 14억 달러
- 산업: 반도체

타임라인

- (2021.3) 양사 간 인수 합의
- (2021.5) CFIUS, 본격 조사 착수
- (2021.6)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반독점국), 인수 승인
- (2021.6) 韓 산업통상자원부, 합병 신고 및 장관 승인 관련 사항 고지
- (2021.6) CFIUS, 심사 완료 시까지 모든 매각 절차 잠정 중단 명령
- (2021.8) CFIUS, 동 인수 건에 대한 국가 안보 위험성 확인 결과 발표
- (2021.12.13) CFIUS 승인 거부 → 매그나칩 인수 중단 발표

⁶³ <https://investors.magnachip.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magnachip-and-wise-road-capital-announce-withdrawal-cfius-filing>



• 주요내용

동 건은 미국 뉴욕거래소(NYSE)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이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 캐피탈과 체결한 약 14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계약에 대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CFIUS의 승인 불허로 최종 무산되었다. 동 매각 건으로 인한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21년 7월 OLED 구동칩(display driver integrated circuit) 기술을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여 동 인수 건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⁶⁴ 2021년 6월 CFIUS는 '국가 안보 위험(national security risks)'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사 완료 시까지 매각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으며 같은 해 12월 승인을 최종 거부하였다.⁶⁵

● Asymchem의 Snapdragon 지분 인수 차단

기본정보

- 인수자: Asymchem (중국)
- 피인수자: Snapdragon Chemistry (미국)
- 규모: 5,794만 달러
- 산업: 의약품/바이오

• 타임라인

- (2022.2) 양 社 간 인수 합의
- (2022.9) 美 CFIUS의 승인 거부 → 양 社는 美 재무부 및 CFIUS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화된 조건'의 합의에 도달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수 중단 발표

• 주요내용

CFIUS는 Snapdragon의 기술 개발에 미국 정부의 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된 점과 중국계 위탁개발생산기업(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로의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여 인수 승인을 거부했다.

⁶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

⁶⁵ <https://investors.magnachip.com/node/12571/html>

2) 평가

● CFIUS의 ‘국가 안보 위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동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CFIUS가 ‘국가 안보 위험’이 확인되었다는 설명 이외에 구체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반도체와 같이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첨단 기술 산업 등에서 CFIUS의 투자 심사가 보다 강화되는 한편, ‘국가 안보 위험’ 등의 기준은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CFIUS의 자의적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심사 승인을 도출해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CFIUS 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

1) 사례

● TikTok 사례

기본정보

- 회사명: ByteDance (중국)
- 피인수대상: Musical.ly (미국)
- 규모: 10억 달러
- 산업: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❶ TikTok 모회사 ByteDance社의 Musical.ly社 인수 사례⁶⁶

• 타임라인

- (2017.1.1)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社는 미국의 소셜네트워크 앱인 Musical.ly社를 인수합병하며 미국 시장에 안착
- (2019.10.9)美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CFIUS에 TikTok의 Musical.ly社 인수합병이 국가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며 심리 청구
- (2019.11.1) CFIUS, ByteDance社의 Musical.ly社 인수합병 건 조사 착수

⁶⁶ 참고: <https://www.torys.com/Our%20Latest%20Thinking/Publications//2020/09/taking-on-tiktok/>

- (2020.8.14)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⁶⁷: ByteDance社에 TikTok의 미국 내 사업체 관련 자산을 90일 내(11월 12일) 매각할 것을 명령
- (2020.11.13) CFIUS,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 15일 연기(11월 27일)⁶⁸

• 주요내용

CFIUS의 승인을 받지 않은 ByteDance社의 Musical.ly社 인수 건에 대해 CFIUS는 2019년부터 TikTok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혐의를 중점으로 국가안보상의 위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8월 14일 TikTok 매각 행정명령을 통해 90일 이내 미국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폐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는 2017년 ByteDance社의 Musical.ly社 인수를 무효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동 행정명령은 ByteDance社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credible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하며, TikTok의 매각 및 인수 관련 건은 모두 CFIUS 승인의 대상이 될 것이라 명시했다.

②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시도 사례

트럼프 대통령의 TikTok 미국 사업부 매각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주요 기업(Microsoft社, Walmart社, Oracle社, SoftBank社 등)이 TikTok 인수전에 참여하였다. CFIUS는 2019년 TikTok 조사를 개시한 이후 TikTok의 국가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 중에 있다.

▶ Microsoft社의 TikTok 인수 시도 사례

기본정보

- 회사명: Microsoft (미국)
- 피인수대상: TikTok (중국)의 미국 사업부문
- 규모(추정): 400억 달러

⁶⁷ 참고: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EO-on-TikTok-8-14-20.pdf>

⁶⁸ 참고: https://cdn.vox-cdn.com/uploads/chorus_asset/file/22036106/cfius_november_12.pdf



• 타임라인

- (2020.8.3) Microsoft社, TikTok 미국 사업권 인수 검토 발표
- (2020.8.3) 트럼프 대통령, Microsoft社の TikTok 인수 추진 건에 대해 45일 기한(9월 15일까지) 내 협상완료를 조건으로 승인
- (2020.8.6) 트럼프 대통령의 1차 행정명령⁶⁹: TikTok에 45일 이후(9월 20일) 모회사 ByteDance社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
- (2020.8.14) 트럼프 대통령의 2차 행정명령⁷⁰: ByteDance社에 TikTok의 미국 내 사업체 관련 자산을 90일 내(11월 12일) 매각할 것을 명령
- (2020.11.13) CFIUS,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 15일 연기(11월 27일)⁷¹
- (2020.9.13) ByteDance社, Microsoft社에 매각 거부 통보

• 주요내용

2020년 8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CFIU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ikTok이 2020년 9월 15일까지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을 경우 TikTok을 미국에서 퇴출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TikTok을 인수하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음을 강조하여 사실상 Microsoft社の TikTok 인수를 조건부(45일 이내)로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 이후 2차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20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행정명령을 통해 45일 이후 TikTok과 모회사 ByteDance社간의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동 행정명령을 통해 “TikTok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소유권 정보 등 방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잠재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미 연방 관련인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노골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연이어 발표한 2차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8월 3일 제시했던 45일 거래 마감 기한을 8월 14일로부터 90일 이후까지로 연장했다. 동 행정명령은 ByteDance社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만한 증거(credible evidence)가 있으며, TikTok의 매각 및 인수 관련 건은 모두 CFIUS 승인의 대상이 될 것이라 명시했다.

⁶⁹ 참고: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presidential-actions/executive-order-addressing-threat-posed-tiktok/>

⁷⁰ 참고: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EO-on-TikTok-8-14-20.pdf>

⁷¹ 참고: https://cdn.vox-cdn.com/uploads/chorus_asset/file/22036106/cfius_november_12.pdf

▶ Walmart-Oracle 공동으로 TikTok 지분 20% 인수 시도 사례

기본정보

- 회사명: Oracle/Walmart (미국)
- 피인수대상: Tik-Tok (중국)
- 규모(추정): 125억 달러

• 타임라인

- (2020.8.17) Oracle社, TikTok 인수전 참전
- (2020.8.27) Oracle社, Walmart社와 공동으로 인수전 참전
- (2020.9.13) ByteDance社, Oracle社와 매각 우선협상 시작
- (2020.9.18) 美상무부, 미국 내 TikTok 사용금지 행정명령(9월 20일부터 시행)⁷²
- (2020.9.19) TikTok, Walmart社-Oracle社과 잠정 합의 도달
- (2020.9.19) 美상무부, TikTok 금지 행정명령 집행연기(9월 27일부터 시행)⁷³
- (2020.9.19) 트럼프 대통령, Walmart · Oracle · ByteDance 3社の 합작법인 'TikTok global' 설립 승인
- (2021.2.10)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TikTok 매각 행정명령의 무기한 중단 결정
- (2021.2.15)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ByteDance社 인수 협상 중단
- (2021.6.9)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제1차 행정명령 ('20.8.6 발표) 폐기⁷⁴
- (2022.8) ByteDance社, 바이든 행정부에 90 페이지 상당의 제안서* 제출
- (2022.9.15) 바이든 대통령, CFIUS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
- (~ 2022.12) CFIUS, 비공개 협상 중단
- (2022.12.29) 바이든 대통령, 「연방정부 기기 내 TikTok 사용 금지법」 서명⁷⁵

⁷² 참고: <https://2017-2021.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9/commerce-department-prohibits-wechat-and-tiktok-transactions-protect.html>

⁷³ 참고: <https://2017-2021.commerce.gov/news/press-releases/2020/09/statement-delayed-prohibitions-related-tiktok.html>

⁷⁴ 참고: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6/09/executive-order-on-protecting-americans-sensitive-data-from-foreign-adversaries/>

⁷⁵ 참고: <https://www.nbcnews.com/tech/tech-news/tiktok-ban-biden-government-college->



(참고) ByteDance社の 제안서 주요내용

동 제안서에 따르면, TikTok은 여전히 ByteDance社の 자회사로 남게 된다. 다만, ByteDance社は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 정부의 미국 TikTok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정부에 TikTok 감독권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했다. ByteDance社가 제안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Oracle社の 서버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 보관
- CFIUS, 신규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시행
- 'TikTok 미국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부서를 신설하고, CFIUS가 선정한 미국 보안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부서 감독을 수행
- Oracle社 및 제3자가 TikTok의 소스코드 검토

· 주요내용

2020년 9월 TikTok은 미국 텍사스州에 Walmart · Oracle · ByteDance 3사가 합작하는 'TikTok Global' 설립을 통해 Walmart社가 전체 지분의 7.5%, Oracle社가 12.5%를 확보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합작 법인 설립을 승인했으나, 지분율을 놓고 잡음이 일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출범 후 ByteDance社は Walmart社와 Oracle社가 진행한 매각 협상을 중단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퇴임으로 협상 지속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2021년 6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20년 8월 6일자 행정명령 폐기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에 대상 앱들을 별도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CFIUS는 ByteDance社와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TikTok과 중국 정부 간의 관계와 미국 사용자 1억 명의 민감 데이터(sensitive data) 유출 우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어 2022년 8월, ByteDance社は 바이든 행정부에 9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CFIUS와의 합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 제안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TikTok이 여전히 미국의 안보 위협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바이든 행정부와 TikTok의 협상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분 아니라 의회의 TikTok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R-FL) 상원의원, 마이크 갤러거(Michael Gallagher, R-WI) 하원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D-IL) 하원의원 등은 2022년 12월 13일 독재국가와 연관이 있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TikTok 사용 금지법(Anti-Social CCP Act)」을 동시에 발의한 바 있다.⁷⁶ 바이든 대통령 또한 2022년 12월 29일 정부 기기 내 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2023)」에 서명하여 40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들의 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⁷⁷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CFIUS를 통해 TikTok의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평가

● CFIUS의 ‘국가 안보 우선순위’와의 관련성 예의 주시 필요

FIRRMA 제정으로 기존 지배적 투자에만 한정되었던 CFIUS의 관할권이 확장되어 TID 미국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 또한 CFIUS의 관할권에 속하게 되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5일 ‘진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CFIUS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⁷⁸⁾’을 발표하여 투자심사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공급망 탄력성 및 안보, 미국의 기술 리더십, 민감 데이터 보호, 사이버 안보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CFIUS와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 데이터, 공급망 등을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따라서 상기 TikTok 사례와 같이 이러한 요소들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투자거래 건의 경우 높은 확률로 CFIUS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⁷⁶ 상원 발의법안 및 하원 발의법안은 다음과 같음. S.5245 - ANTI-SOCIAL CCP Act., H.R.9508- ANTI-SOCIAL CCP Act

⁷⁷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2023)」의 Division R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참고: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2617/text>

⁷⁸ 영문명칭: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투자거래 건, 인수-매각사 선제적인 CFIUS 신고 검토가 유리해⁷⁹

CFIUS는 미국 시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TikTok과 같이 플랫폼 기업 사례 외에도 보험 회사, 호텔 체인, 생명공학 회사, 의료 회사, 통신, 금융기관 등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과 연관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31 C.F.R. § 800.241. 상의 민감한 개인정보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CFIUS의 심사대상에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CFIUS는 단순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접근의 범위 및 권한, 접근 유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TikTok 사례에서 CFIUS는 중국 기업이 TikTok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TikTok이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미국 시민의 개인 자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접근 유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즉,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심사는 매우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TikTok이 받은 장기간의 CFIUS 조사와 같은 선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⁷⁹ <https://www.velaw.com/insights/tiktok-and-oracle-ink-data-storage-agreement-in-apparent-effort-to-avoid-further-cfius-scrutiny/>

IV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1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중국의 대미투자 감소에 대해 추후 상황 모니터링 필요하며, 미국 매도인들의 중국 투자자에 대한 선호 역시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에 있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CFIUS 검토 시 외국인 투자자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에서의 투자 활동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록 CFIUS의 심사 기준이 직접적으로 경제제재 조치를 원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상 기업과의 연결성 또한 안보 심사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중국 기업들이 우려거래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 중국 기업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간접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CFIUS가 주요 검토 대상으로 삼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주로 외국 국가 또는 국가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정부기관(예: 국민연금공단 등)의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들 또한 정부의 소유 및 통제 관계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외적으로 분명한 국영기업이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체계가 지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외에도 미국의 영향으로 EU, 일본 등 타국가들 또한 투자심사 권한 강화 논의 중이며, 따라서 향후 미국뿐 아니라 타국가들에 대한 투자심사 대응 방안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책 동향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입법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CFIUS 제도는 중요한 예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CFIUS 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FDI의 주요 시장이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이 미국 국내 공급망 강화 입법 등으로 인하여 미국 시장의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대미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진입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이 되는 핵심기술산업 또는 금융산업 등은 CFIUS의 주요 심사대상이 되는 만큼, FIRRMA의 내용과 CFIUS 심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CFIUS 심사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한 방어 논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미투자 전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 및 CFIUS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2 CFIUS 심사 관련 투자 진출 체크리스트

앞서 살펴본 미국 CFIUS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미국 투자 진출 체크리스트

검토 분야	번호	검토 세부항목	확인 내용
심사 대상	1	투자자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정부, 기업 등)인지?	Yes: 2번으로 No: 심사대상 X
	2	외국인 투자자가 호주, 캐나다, 또는 영국 국적의 예외투자자인지?	Yes: 심사대상 X (면제국가) No: 3번으로
	3	외국인의 투자가 민감한 국가안보시설에 인접한 부동산 거래에 해당하는지?	Yes: 심사대상 O (자발적 신고 가능) No: 4번으로
	4	외국인이 미국 기업(business)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control)하게 되는지?	Yes: 5번으로 No: 6번으로
	5	지배적 투자인 경우, 핵심기술 및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등과 관련되는지?	Yes: 8번으로 No: 5-1번으로
	5-1	해당 투자 거래로 인해 미국 국가 안보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Yes: 심사대상 O (자발적 신고 가능) No: 7번으로
	6	비지배적 투자인 경우, 핵심 기술 및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등과 관련되는지?	Yes: 6-1번으로 No: 7번으로
	6-1	해당 투자로 인하여 외국인이 (1)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지거나 (2) 회원자격, 옵저버 권리 또는 이사회에 이사 추천 등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거나 (3) 상당한 의사 결정 개입이 가능해지는지?	Yes: 8번으로 No: 7번으로

검토 분야	번호	검토 세부항목	확인 내용
심사 대상	7	대상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안보 고려 요소가 존재하는지?	Yes: 심사대상 ○ (자발적 신고 가능) No: 심사대상 X
	8	(1) 외국인이 미국 기업의 직/간접적 의결권의 최소 25% 이상을 가지게 되고, (2) 외국 정부 기관이 동 외국인의 직/간접적 의결권을 49% 이상 가지고 있는지?	Yes: 의무신고 ○ No: 심사대상 ○ (자발적 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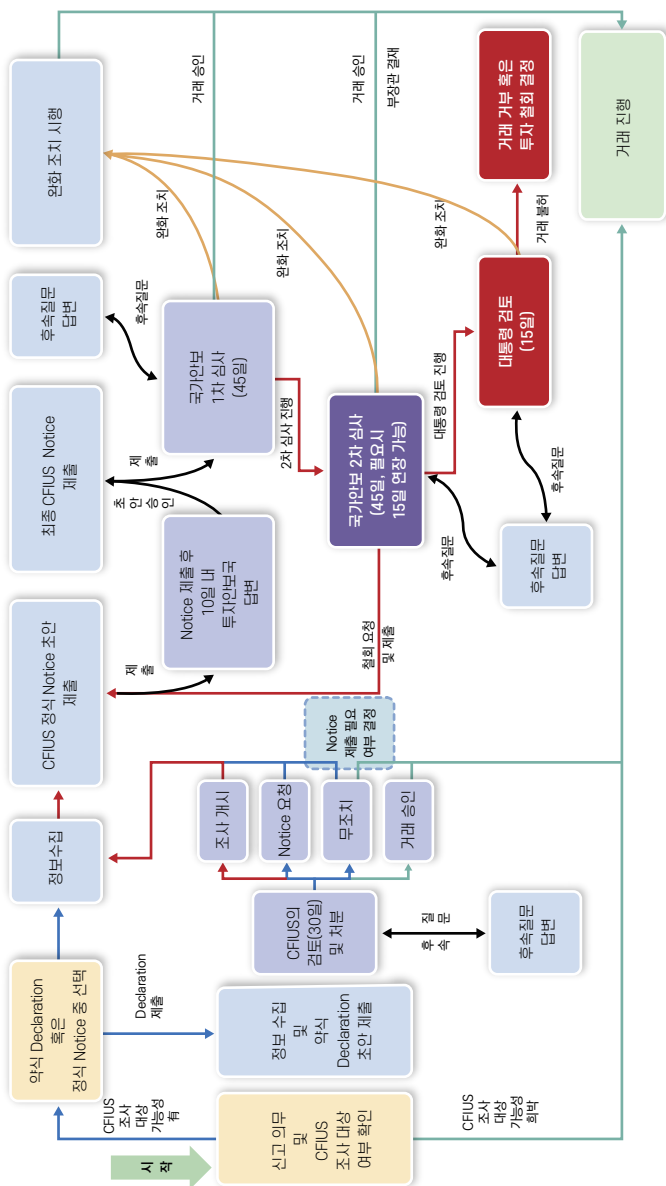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절차	9	약식신고(declaration)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5페이지 이내 약식 신고서 제출
	10	정식신고(notice)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신고의무 확인)	의무신고 대상일 경우 반드시 진행, 그 외 심사대상인 경우 자발적 신고 가능
	11	CFIUS의 이행 및 처벌조치의 대상이 될 위험은 없는지?	정보의 정확성 등 검토
	12	심사고려요소 중 관련 항목이 있는지? (국가안보위협평가)	투자 거절의 가능성에 대비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결과	13	CFIUS의 승인 거절이나 거래금지 권고가 있는지? (심사절차 개시 후 최대 105일 이내)	승인 거절 사유 확인 후 신고 내용 보완, 거래금지 권고 시 사유 확인
	14	CFIUS로부터 완화계약 체결 요구가 있는지?	완화계약의 내용 검토 후 투자 진행 여부 결정

출처: 저자 작성 (2023)

그림3. CFUS 심사 절차 및 이후 조치 순서도



발간자료번호: KOTRA자료 23-040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CFIUS) 가이드북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3년 5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657-5 (95320)



Copyright © 2023 by KOTRA and Lee & Ko.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습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979-11-402-0657-5 (95320)